

## 시론



강동범

-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 법무부 검찰위원회 위원장
-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 법학전문대학원에 법학부를 부활하여 법학의 저변을 확대해야

우리나라 1세대 형사법학자이자 세계적인 학자로서 독재정권에 맞서 대학의 자유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셨던 월송 유기천 교수님은 일찍이 1969년 ‘민족중흥과 법조교육의 근본문제’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법조인의 중요성을 설파하셨다.

“조국근대화를 부르짖고 민족중흥의 길을 모색한다면서 국가의 가장 중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법조인의 기능을 도외시한다면 이는 마치 들보나 서까래를 빼놓고 집을 세워 보려고 하는 경우와 흡사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의 어느 다른 구성원들보다도 법조인은 그 해당 국가로 하여금 병리현상을 제거하고 생리현상이 유지되도록 그 사회의 정의를 실천에 옮기는 국가존립의 기초가 되는 중대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 법과대학 또는 법학과가 법학교육을 담당하여 왔고, 법관·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은 사법요원양성소, 조선변호사시험, 고등고시 사법과를 거쳐 사

법시험을 통해 배출되었다. 그 후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 제정·시행되고,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의 부칙 제4조에 의해 사법시험이 2017년까지 시행되고 다음 해부터 폐지되면서,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서 3년의 교육과정을 거쳐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의 편익적 이수(사법시험)에서 법학교육과정의 필수적 이수(변호사시험)로 바뀌는 등 가히 혁명적 변화가 생기면서, 법학 교육도 천지개벽하였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였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되면서 학부의 법학과(이하 '법학부')는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4년제 일반대학의 법학계열 입학정원이 2008년에는 10,270명이었는데 법전원이 문을 연 2009년에는 5,493명으로 거의 절반으로 급감하더니, 2020년 3,177명(30.9%), 금년에는 2,991명으로 2008년 정원의 29%에 불과하며, 전체 입학정원(313,073명)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교육통계서비스 참조). 이는 보편적 법학교육 내지 학부법학교육의 대폭적인 축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해지는 땅 형법이론의 비가' 또는 '위기의 형법학'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법학교육은 거의 궤멸 상태라고 할 것이다.

법학교육의 심각성은 법학사의 현저한 감소에서도 알 수 있다. 법전원 도입 전에는 법학사가 매년 10,000명 넘게 배출되었는데, 법전

원을 인가받은 대학의 법학부 신입생 모집 중단(2009학년도)의 효과가 2015년부터 나타나기 시작(2011년 법학사 8,897명 기준 85%인 7,565명)하여 2020년(4,093명)에는 2011년 법학사의 절반 이하(46%)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에 따라 일반대학의 학사학위 취득자 중 법학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평균 3.0%를 유지하였는데, 2015년 2.4%, 2016년 1.9%로 급격하게 줄었고 2019년 1.31%, 2020년 1.26%로서 2011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10년 만에 법학사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는데, 앞으로도 비록 그 폭은 줄어들 수 있지만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법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적어지면 그 사회의 준법수준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의 평화적 분쟁해결을 어렵게 할 것이다. 나아가 법치주의의 실현도 요원하다.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이 정도라도 발전한 것은 법학공부를 한 다수 시민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으며, 법학사의 대폭적인 감소현상이 지속된다면 얼마가지 않아 우리 사회는 또 다른 형태의 무법사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거기서 초래되는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손해와 사회적 비용은 공동체의 평화로운 공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법학부 폐지의 여파는 법학연구에도 직격탄을 날림으로써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급격히 쇠락하고 있다. 법학이 발전하려면 법학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그 핵심이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학 연구자가 충분

히 확보되어야 한다. 법학 연구자는 통상 법학사 → 법학석사 → 법학박사의 과정을 거치지만 석사부터 또는 박사만 법학을 전공하더라도 법학 연구자가 될 수 있다. 법학 연구자의 통계를 보면, 그 수가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학 연구자의 첫 단계인 석사학위 취득자를 보면, 2011년 919명 중 일반대학원 449명(48.9%), 전문대학원 66명(7.2%), 특수대학원 404명(44.0%)이었는데, 법전원 1기가 졸업한 2012년에는 2,563명 중 일반대학원 494명(19.3%), 전문대학원 1,670명(65.2%), 특수대학원 399명(15.6%)으로 법전원 졸업생에게 법학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법학 석사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법학전문석사의 경우 변호사로서 대부분 법조실무에서 활동하는 점을 생각하면, 실질적인 법학 연구자의 증가로 보기는 어렵다. 교수의 연구를 도와주면서 법학 연구자의 길로 들어서는 법학 학술석사가 2015년까지 400명대를 유지하였으나 2016년 300명대 후반(392명)으로 감소하더니 금년에는 320명으로 2011년에 비해 129명(28.7%)이나 줄었다는 사실은, 전업학생 수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교수 등 현재의 법학 연구자의 연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법학 후속세대의 감소로 인하여 미래의 법학 연구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오늘날 가정이나 학교 또는 직장에서는 물론, 차를 타거나 식사를 하거나 쇼핑을 할 때에도 의식하든 안 하든 법적 문제가 존재하는

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변호사의 자격은 없더라도 교양이나 전공으로 배운 법률지식이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법률 지식이나 법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사회가 복잡·세분화되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에서 분쟁을 사전에 막고, 발생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법 제8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전원을 인가받은 전국 25개 대학은 법학사 학위과정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지금 어떠한가? 법학 교육과 연구 모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고, ‘교육을 통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의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법전원 도입 이유 및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조)이라는 법전원의 설립목표도 달성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

법전원을 설치하는 대학에 법학사 학위과정을 두면 안 되는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다수의 법학자들이 지적하고 우려하는 것처럼, 법학부를 폐지함으로써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학문인 법학에 대한 교육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법학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첫걸음은 학부에 법

학사 학위과정을 다시 설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학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법학부의 부활이 필요하다. 법학연구를 활성화하려면 연구자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과제이다. 즉 ‘법학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적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 법학과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전업 대학원생들이 밀려들어와야 법학연구가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연구자로서 일생을 보낼 수 있는 교육·연구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전원을 도입하면서 법전원의 조기 정착을 위해 법률에 의하여 폐지하였던 법학과를 부활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도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즉 법학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법학 연구자가 자신이 공부하고 연구한 성과를 교육할 공간과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일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법학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이후 법학계는 엄청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즉 법전원을 설립한 대학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법에 따라 법학사 학위과정을 폐지한 결과 일반대학의 법학계열 입학정원이 3분의 1 수준으

로, 법학사 취득자는 절반 정도로 급감하여 보편적 법학교육이 거의 사라졌으며, 법학 연구자의 수도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법적 지식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이들 모두가 변호사 자격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변호사라는 전문가자격은 없지만 보편적인 법적 지식 내지 법적 사고방식(소위 리걸 마인드)을 가진 사람이면 충분한 경우도 대단히 많다. 법학계열 입학정원과 법학사 취득자의 급감은 법학의 교육과 연구를 모두 어렵게 만듦으로써 보편적 리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 법학을 재생시켜 한 단계 더 높이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법전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학에도 학부에 법학과를 다시 설치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법학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준법의식을 고양시키고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학 연구자들의 활동 공간을 확장하여 그들이 희망을 갖고 강의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법학의 저변을 넓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법학의 교육과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첫 걸음이다.